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5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전담기구인 중대재해예방실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운영하여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대재해예방실 신설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의 제목 변경(직속으로 하는 담당관 → 밑에 두는 보좌기관)
 - 안 제5조제2항에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규정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일부 문구 수정
 - 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 수정
 - 안 제1조 띄어쓰기 수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1. 12. 31. ~ 2022. 1. 20.)
 - 당초 입법예고는 중대재해 전담기구의 명칭은 중대재해대응실로 하고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명칭을 중대재해예방실로 하고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출한 조례안에 반영하였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중,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 제정되었음.

○ 2022.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처벌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조제9호¹⁾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처

별의 대상에 포함됨.

- 또한 같은 시행령 제4조제2호²⁾는 일정규모의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전담조직이 필요해 보이며,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했거나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 구에서도 재난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2022. 1. 1.부터 운영 중이나 현재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법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추후 강남구의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과” 단위 규모의 직제로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0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질병자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0명 이상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보호대상	종사자	시민
법적의무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 사자, 시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이행	
적용시기 <u>2022.1.27.</u>	다만,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u>2024. 1. 27.</u> 부터 시행	

- 한편,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의 직제가 적정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이하 “규정”) 제5조제1항 중 제1호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제2호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명시하고 있는 바,
- 먼저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강남구의 중대재해예방실 설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강남구에는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가 <사례>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예방실의 소관업무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업무와는 대상, 업무범위 등 사무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
 - 다음으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5항에 근거하여 중대재해예방실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이 “과” 단위 규모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기준 강남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종사자) 수는 2,783명,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63개소임.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무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하고, 강남구 사무 중 중대산업재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4) <사례>

- 강남구의 재난 안전관리,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폭염·한파·가뭄·화재예방 및 소방관련 업무 등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청소, 수목 관리, 도로 보수, 하수 관리, 청사 관리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 우리 구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5)가 있는 바 재해예방 업무는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나,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강남구의 경우 주로 구청사,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여기 해당할 것임. 현재 강남구에서 관리 중인 공중이용시설은 63개소6)이며,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2개소7), 또 향후 공사가 예정된 주요시설은 7개소8)임.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건립 전 설계단계부터 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이미 건립되어 사용 중인 공중이용시설도 노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관리

5) <사례>

- 실제 2017년 5월 강남환경자원센터 지하2층에서 압축기 오작동으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도곡동 빗물받이 설치 공사 중 작업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6) 강남구 공중이용시설

계	청사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교량	기타
63	5	14	3	34	2	5

※ 기타 : 미미위 강남세움센터, 구립행복요양병원, 역삼청소년수련관,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청사, 강남스포츠문화센터

7) 공사중인 시설(50억 이상 공사)

연번	공사명	관리부서	금액(억)	위치	공사기간
1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	교통행정과	136	역삼동 635-1	'19.10.28~'22.3.31
2	개포4 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	주민자치과	76	개포동 1204	'20.4.13~'22.3.5

8) 공사 예정 주요시설

연번	공사명	관리부서	사업비(억)	위치	사업기간
1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 공사	뉴디자인과	66	신사동 564	'22.2~'23.9.
2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총무과	2,431	삼성동 16-1	'16년~'26년
3	일원1·2, 수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민자치과	597	일원동 712-3 개포동 12-6 수서동 718-2	'21년~'24년
4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	주민자치과	155	세곡동 550	'22년~'25년
5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뉴디자인과	812	수서동 730	'22년~'26년
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지원과	119	관내	'22년~'26년
7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일자리정책과	418	역삼동 789-11 역삼동 789-20	'22년~'25년

할 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제1항에서는 조의 제목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에서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 제2조제9호⁹⁾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2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 중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조(목적), 안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안 제15조(동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한 것임.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기존의 팀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해 본 후 필요하다면 향후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고 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팀제보다 부서로 격을 높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다고 판단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0호

제안일자 : 2022.2.1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취지 및 업무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
(안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 구의 소관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 정책과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p>	<p>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 ----- ----- ----- ----- ----- ----- 위 해 ----- -----.</p> <p>② <u>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u>,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실을 둔다.</p>	<p>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u> -----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0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1.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부구청장 밑에 두는 중대재해 예방 보좌기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구청장 밑에 두는 중대재해 예방 보좌기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31. ~ 2022. 1. 20.)

- 당초 전달기구의 명칭을 ‘중대재해대응실’로 하고 구청장 직속에

- 두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 전담기구 명칭을 ‘중대재해예방실’ 로 하고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수용

입법예고안	수 정 안(의견 반영)
<p>제4조(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p> <p>① ----- ----- 위해 ----- -----.</p> <p>② <u>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대응실을 둔다.</u></p> <p>제5조(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 구의 소관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 정책과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p>	<p>제4조(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p> <p>----- ----- 위해 ----- -----.</p> <p><삭 제></p> <p>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 ----- ----- ----- 위해 ----- -----.</p> <p>② <u>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실을 둔다.</u></p>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4조 중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를 “위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를 “위해”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실을 둔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 구정 주요시책의 보도와 구정홍보, 구민소통 등을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정책홍보실을 둔다.</p> <p>제5조(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 구의 소관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정책과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p> <p><신 설></p> <p>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p> <p>-----</p> <p>-----</p> <p>-----</p> <p>-----</p> <p>-----</p> <p>제4조(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 -----</p> <p>-----</p> <p>----- 위해 -----</p> <p>-----</p> <p>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p> <p>-----</p> <p>----- 위</p> <p>해 -----</p> <p>-----</p> <p>②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실을 둔다.</p> <p>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p>

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15조(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생략)

치법 제12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동의 설치) ① -----
----- 제7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총무과 정명기(☎ 02-3423-5174)